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행정 정보공개 수수료 산정기준 내용을 반영하고, 수수료 납부방법의 다양화로 시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수수료 납부 방법 다양화로 시민편의 제공
- 현행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을 위한 표준 수수료 적용(안 별표1)
-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시 수수료 기준 개선(안 별표2)
 - 부과기준을 ‘매’에서 ‘시간’으로 변경
- 전자파일 복제 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안 별표2)
 - 부과기준을 ‘매’에서 ‘MB(메가바이트)’로 변경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행정 정보공개 수수료 산정기준 내용을 반영하고, 수수료 납부방법의 다양화로 시민편의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5조제2항에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기존 현금으로만 징수하던 것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납부방법을 다양화하였으며,
- 안 별표 1의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신청 수수료를 기존 50,000원에서 10,000원 증액한 60,000원으로 변경하였고,
- 안 별표 2의 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시 수수료 부과기준을 '매'에서 '시간'으로 변경하였고, 전자파일 복제 시 수수료 부과기준을 '매'에서 'MB(메가바이트)'로 변경하였음.

○ 검토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원문 공개 대상(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인 정보의 경우에도 이를 정보공개 청구하여 열람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야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1MB(메가바이트) 이하의 전자파일 복제물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시민들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문서·도면·사진 등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시간 단위로 개선하고, 1시간 이내의 열람은 무료로 제공하며, 정보

공개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수수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아울러 수수료 납부 시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민편의를 도모하였고, '종합유원시설업'에 대한 허가 신청 수수료를 전국표준인 60,000원으로 조정하였음.

-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